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방개혁 내용에 국방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추가 등〉

■ 박선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47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최근 3개년 각 군 초급간부(하사, 중·소위) 충원율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선원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14.
3. 회부연월일 : 2026. 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 개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 군은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수급 위기, 초급간부 이탈 등 인력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부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국방부장관이 대통령 및 국회에 전년도 국방개혁의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할 경우 민간·여군인력의 활용확대 및 장교의 진급에 관한 사항 등 국방개혁 관련 중요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국방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통제 및 투명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개혁의 목적·기본이념 및 기본계획에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방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국방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 의하여 매년 병역자원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국방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병력수급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방개혁의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민간·여군인력의 활용확대 및 장교의 진급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방개혁 관련 제반 정책에 대한 통제와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및 제14조 등).

Ⅲ. 검토의견

1. 국방개혁 목적, 국방개혁 기본이념 및 국방개혁기본계획에 국방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추가

□ 개정안은 국방개혁의 목적·기본이념 및 기본계획에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방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변화, 과학기술----- -----변화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방인력 수급 여건의 변화에----- ----- ----- -----.
제2조(기본이념) 국방개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 ----- ----- ----- -----.

1. ~ 5. (생략) <u><신설></u> 제5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생략)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매 5년의 중간 및 기간 만료 시점에 한미동맹 발전, 남북군사관계 변화추이 등 국내외 <u>안보정세</u> 및 국방개혁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병력수급 예측 및 국방인력 운용구조의 재설계</u> 제5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안보정세, 국방인력 수급현황</u>----- ----- ----- --. ④ (현행과 같음)
--	--

□ 현행 국방개혁기본계획에는 국방인력 수급과 관련하여 국가인구 감소 문제가 개괄적으로만 언급¹⁾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국방개혁 기본이념은 문민기반 확대, 합참 기능강화 및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 군구조의 기술집약형으로의 개선, 저비용·고효

1)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국방부, 2023.3.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구조 발전

- 미래 국가인구 감소, 전쟁양상 변화로 현재의 병력 중심 군구조는 한계에 직면

율의 국방관리체제로의 혁신,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 문화의 정착²⁾의 5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방개혁기본계획 추진 시 국방인력 수급현황을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최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력수급 문제가 국방 분야의 구조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³⁾을 고려할 때, 이를 법률의 목적 및 기본이념,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명시하는 것은 향후 군구조 개편 및 인력운용 정책의 방향성을 보다 분명히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임.

□ 다만, 문구 수정 의견으로 안 제1조에서 국방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은 국내외 여건 변화의 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개정안의 문장 배열 조정이 필요해 보임.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u>국내외 여건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u> 에 따른 전쟁양상의 <u>변화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방인력 수급 여건의 변화</u> 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하 생략)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u>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방인력 수급 등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u> 에 따른 전쟁양상의 <u>변화</u> 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하 생략)

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이념) 국방개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민기반의 확대
2.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및 육군·해군·공군의 균형있는 발전
3. 군구조의 기술집약형으로의 개선
4.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의 혁신
5.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의 정착

3) KOSIS 인구통계포털에 따르면,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4,322명이었으나 2026년 233,182명으로 감소하였고, 2040년에는 157,964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3년간 각군 초급간부(하사, 중·소위) 충원율은 참고자료 참조

□ 국방부는 우리 군이 병역자원 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인력 수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 법에 포함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안 제1조의 문구에 대해 인력수급 관련 내용을 국내외 여건 변화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임.

2. 국방개혁 관련 대통령 및 국회 보고 시 보고내용 구체화

- ☐ 개정안은 국방개혁 추진실적 보고 범위에 민간·여군인력의 활용 확대 및 장교의 균형있는 진급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보고 등) ① (생략) <u><신설></u>	제9조(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 및 국회에 전년도 국방개혁의 추진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1. 제13조에 따른 민간인력 활용 확대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여군 인력의 활용 확대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장교의 진급의 공정성 및 균형있는 진급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u>②</u> (생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 ☐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매년 대통령 및 국회에 국방개혁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항목까지 열거하고 있지는 않음⁴⁾.

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9조(보고 등) ①국방부장관은 매년 대통령 및 국회에 전년도 국방개혁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국방개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최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민간인력, 여군 활용 확대 및 처우개선, 장교 진급의 공정성 및 균형 있는 진급기회 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군무원 및 여군 인력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장교 진급의 공정성과 균형성 확보 역시 조직 신뢰성 및 인사 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정책적인 의의가 있다고 보임.

□ 국방부는 본 법률의 목적⁵⁾이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 발전 등 국방 전반의 기본사항을 정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으로도 관련 사항이 보고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이며,

현행법에서 국방개혁 추진실적 제반사항을 보고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분야만을 별도로 명시하여 의무적 보고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민간인력 처우개선에 대한 조항 추가

- ☐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민간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민간인력의 <u>활용확대</u>) ① (생략) <u><신설></u>	제13조(민간인력의 <u>활용확대 등</u>)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방부장관은 민간인력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현행법에는 민간인력의 활용 확대에 관한 사항만 규정⁶⁾되어 있고, 민간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군무원 등 민간인력을 정비·군수 등 비전투분야에 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법률에 반영하려는 입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3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①국군의 부대와 기관은 국방 관련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무원 등을 포함한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② 국군의 부대와 기관에서 분야별·직급별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와 관련하여 민간인력을 별도의 처우개선 대상으로 명시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민간인력의 활용확대와 연계하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4. 국방인력에 관한 미래운영방안 마련 관련 조항 추가

-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자원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국방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제반 이행사항을 명시하려는 것 등임(안 제14조제2항~제5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전방향) (생략)	제14조(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전방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국방인력 운용구조의 재설계를 포함한 중장기 운영 및 조정에 관한 미래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미래운영방안에는 군구조 개편방안 및 이와 연계된 인력운용구조 조정 방향, 군무원·부사관 등 대체인력의 필요 규모, 충원목표 및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미래운영방안의 주요 내용을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

<신 설>	계획에 3년 단위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 및 반영의 절차와 구체적인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현행법 제14조는 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전방향을 선언적으로 규정⁷⁾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하여 매년 병역자원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미래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그 주요 내용을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내용 측면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인력운영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이며 이를 매년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국방개혁기본계획에 3년 단위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수립의 체계성 및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군구조 개편 및 인력운용구조의 재설계는 조직 구성 및 예산 운영 등과 연계되는 구조적·장기적 사안으로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재설계가 이루어질 성격의 사안이라고 보기에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임.

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4조(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전방향) 국가는 미래 안보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개편하고, 기술집약형 군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며, 병역자원의 양적·질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방인력 운영구조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매년 운용구조의 재설계를 의무화하기보다는 군 인력 운용 현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군구조 개편 및 인력운용구조의 재설계는 「국방개혁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14조제3항에서는 대체인력의 예시로 부사관을 포함하고 있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병 인원 감소에 대응하여 그 보완수단으로 부사관을 증원하자는 것으로 이해되나, 부사관은 국군을 구성하는 기본 인력으로서 ‘대체인력’의 개념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국방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적극 공감하나, 국방인력 운용구조 재설계를 포함한 미래운영방안은 국방개혁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며, 부사관은 대체인력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

※ 참고자료 : 최근 3개년 각 군 초급간부(하사, 중·소위) 충원율
(중·소위)

(단위 : 여명,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6월까지)		
	정원	운영인력	충원율 (운영률)	정원	운영인력	충원율 (운영률)	정원	운영인력	충원율 (운영률)
육군	14,100	14,300	101.6%	13,700	13,600	98.8%	13,700	13,400	97.6%
해군	1,500	1,600	107.9%	1,500	1,500	104.7%	1,500	1,500	103.7%
공군	2,900	2,800	96.4%	2,900	3,000	101.2%	2,900	3,000	103.6%
해병	800	800	100.5%	800	800	96.7%	800	700	88.1%

(하사)

(단위 : 여명,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6월까지)		
	정원	운영인력	충원율 (운영률)	정원	운영인력	충원율 (운영률)	정원	운영인력	충원율 (운영률)
육군	23,600	19,600	82.8%	22,800	16,000	70.0%	22,300	14,900	66.6%
해군	6,200	5,800	93.5%	5,700	4,700	82.3%	5,700	3,800	66.4%
공군	6,600	6,100	92.4%	6,500	5,900	91.4%	6,500	5,200	80.0%
해병	2,300	2,100	89.3%	2,300	1,800	77.5%	2,300	1,400	62.1%

* 충원율 : 정원 ÷ 운영인력

* 소위 정원은 따로 없으며, 중·소위 통합 정원으로 충원율 산출